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5. 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4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4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53회 임시회 제 1 차 위원회 (98. 5.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김 정 수

가.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및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중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궐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별 1대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면제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확대하여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중에서 보궐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별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 (안 제2조2항 및 제2조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공장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 (안 제20조의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구세감면조례에 반영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2월12일자 내무부장관이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이미 얻은 것으로 간주됨.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은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종전에는 세대별로 1대씩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만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는 물론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중에서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1대씩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를 확대 조정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서는 면제대상 자동차의 1가구 2차량에 대한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1을 신설하여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있어서 공장용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공장용 건축물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례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의 내용은 각 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여건도 고려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 향후 지방자치관계법령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98. 4.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및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과 「기업구조 조정 추진방안」 중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별 1대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면제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확대하여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송합자동차·화물자동차 중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별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案 제2조2항 및 제2조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 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공장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案 제20조의1)

3. 개정근거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 내무부장관허가 : 내무부세제13400-207(98. 2. 12)호에 의한 허가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 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팔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전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20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② 국가유공자동예우및지원에관한법 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 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 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u>배기량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u> <u>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다</u>)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경 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 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 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 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 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u>기재된</u>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동"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p> <p>1. 배기량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p> <p>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p> <p>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p> <p>4. 이륜자동차</p>

현 행	개 정 안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u>(신 설)</u></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 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p>제20조의1(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 지역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p>
<p><u>(신 설)</u></p>	

현 행	개 정 안
	<p>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중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